

공무, 외교, 의전 비자 Visas Diplomáticas, Oficiales y de Cortesía

- 공무비자(OM)는 Official Passport 공무여권을 소지한 자
- 외교비자(DM)는 외교 여권을 소지한 자
- 의전비자(CM)는 일반여권을 가지고 있으나 양국가의 정부 기관 혹은 국제기구로부터 초청을 받았거나, 계약이 되어서 일정기간 도미니카공화국에 체류 해야 하는 경우

1. 비자 노트: (Note Verbale)

- 비자 신청인 이름, 국적, 여권번호, 외교관일 경우 직위, 나머지의 경우 해당 업무 관련 기관의 이름과 직위, 방문 목적을 명시 하고 있어야 함. (외교관은 외교부로부터, 공무 혹은 의전은 해당 유관기관의 직인과 서명이 있는 서신)

2. 비자신청양식서 (Formulario de Visa)

대사관홈페이지 www.embadomkr.gob.do, 도미니카공화국 영사홈페이지 www.consuladord.com 에서 출력, 컴퓨터로 작성하시거나, 기 쉬운 활자체로 작성하여야 하며, 빈 공간이 없이 모두 기재. (양쪽 검지 지문, 서명 포함) 대사관 비치용 사용해서 당일 작성도 가능 함.

3. 사진 (Una fotografia)

1 매 (사이즈 4cm x 5cm) 정면 사진으로 흰 바탕, 안경 미착용

4. 여권 원본 (Pasaporte Original)

최소 12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5. 주민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표 영문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표 영문 1부 (*단, 외교여권 소지자는 주민등록등본표 제외)

6. 비자 인터뷰 신청: CM 비자 (모든 영사 업무는 오전만)

전화나 이메일로 대사관에 인터뷰 신청일을 예약합니다.

(OM, DM의 경우는 인터뷰 생략합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러 오지 않는 경우 위임 받은 자의 출처가 정확하여야

하며 저희에게 본인의 정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7. 비자발급 소요시간과 비용 (모든 영사 업무는 오전만)

예상 소요시간은 DM(외교), OM(공무) 비자의 경우는 1주 이내, CM(의전) 비자는 최소 1-2주.

최종결정은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에서 결정하며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은 통보를 받고,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됨. 즉, 주한도미니카공화국 영사직원에게 비자 승인 결정권이 없음. 이러한 이유로 신청인이 비자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환불이 안 되는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기를 강력히 권유하며, 혹 비자 취득 소요시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져서 미리 구입한 항공권에 차질이 생긴 경우에 대해서는 대사관의 책임이 없음을 미리 공고함. 비용은 없습니다.